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예규에 반영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되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민원인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는 업무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5)
- 이미지폐쇄등기부와 영구보존문서가 포함된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6제2항 및 제3항)

3.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및 제28조”를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로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등”을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및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의1호, 제3호, 제4호, 제7호, 제9호, 제9의1호, 제10호, 제12호와 제3항 제2호(재발급의 경우에 한함) 및 제3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 또는 공장저당목록에 대한 열람은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을 “일부를 증명하

는 서면(이미지폐쇄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함)을” 로 한다.

제2조제1항 “제2-1호” 를 “제2의1호” 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9의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1.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인은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예약 등 : 민원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미지폐쇄등기부 또는 영구보존문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지폐쇄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영구보존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자증명서 발급 : 민원인은 「상업등기규칙」 제46조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12. 신청서 및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민원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이미지폐쇄등기부 및 영구보존문서의 열람은 제외함), 제2의1호, 제3호, 제6호, 제8호의 서비스

2.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의 보안매체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번호를 생성하는 모바일 OTP 발급 및 재발급

3.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예약(이하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이라 함)

제5조제1항 중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을 “등기사항증명서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신청은” 을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신청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의 결제, 예금계좌의 이체, 전자화폐의 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신청은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인 경우에도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

제5조제8항 중 “등기포탈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을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인터넷 열람 등에 관한 업무는” 을 “인터넷 열람 등에 관한 업무(신청서 및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업무는 제외함)는” 으로 한다.

제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의 경우에는 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은 제

공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지, 공개를 원하는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호, 공개를 원하는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예약을 한 신청인은 예약 당시 부여받은 발급번호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무인발급기 화면에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은 1등기기록에 대하여 1통만 예약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1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4항의” 를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의” 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발급예약을 하려는 자는” 을 각각 “발급예약을 통해 신청인이 사전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로 한다.

제14조의6의 제목을 “이미지폐쇄등기부 등의 열람 및 영구보존문서 발급예약” 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의 규정은 매매목록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공동담보목록을 제외한 영구보존문서(이하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된 영구보존문서’라 함)에 대한 발급예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의6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미지폐쇄등기부 및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된 영구보존문서의 열람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다.(2) 및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8.나.(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공시제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된 영구보존문서가 포함된 등기기록의 열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공시제한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그 열람이 가능하다.

제15조제1항 중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의”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를 “무인발급기 발급예약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로 한다.

제1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주과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에 관한 무인발급기의 수수료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제1항 중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를 “무인발급기 발급예약과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터넷에 의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을 각각 “인터넷에 의한 무인발급기 발급예약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을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10.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예약 등 : 민원인은 이미지폐쇄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영구보존문서에 대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9의1.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인은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0.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예약 등 : 민원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미지폐쇄등기부 또는 영구보존문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지폐쇄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영구보존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11. 전자증명서 발급 : 민원인은 「상업등기규칙」 제46조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12. 신청서 및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민원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

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이미지폐쇄등기부 및 영구보존문서의 열람은 제외함), 제2의1호, 제3호, 제6호, 제8호의 서비스

2.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의 보안매체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번호를 생성하는 모바일 OTP 발급 및 재발급

3.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예약(이하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이라 함)

제5조 (신청에 관한 특칙)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신청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신청은 신청인이 인터넷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

제5조 (신청에 관한 특칙) ① -----
----- 등
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
량발급예약 -----

-----.

② -----

-----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신
청은 -----

를 위해 제2항 이외의 지급방법 및 신청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등기포탈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에 정할 수 있다.

제7조 (인터넷 열람등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인터넷 열람 등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수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수납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수행한다.

제9조 (열람의 종류) (생략)

1. (생략)
2.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 : 부동산등기부의 경우에는 특정인지분·현재소유현황·지분취득이력, 법인등기부의 경우에는 임원란·지배인란·지점란 등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볼 수 있다. <단서 신설>

<신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

제7조 (인터넷 열람등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인터넷 열람 등에 관한 업무(신청서 및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업무는 제외함)는 -

-----.

제9조 (열람의 종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다만,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의 경우에는 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5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 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 무인발

급기 발급예약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소재지, 공개를 원하는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호, 공개를 원하는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예약을 신청인은 예약 당시 부여받은 발급번호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무인발급기 화면에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은 1등기기록에 대하여 1통만 예약할 수 있다.

제14조의2(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절차 등) ①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하려는 사람(다음부터 “예약자”라 한다)은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4항의 이용등록 절차를 거친 전자증명서 정보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4조의2(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절차 등) ① -----

-----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의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발급예약절차) ① 부동산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예약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소
재지, 공개를 원하는 명의인의 주
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
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
편주소 등. 단, 발급 가능 시간을
통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야 한다.

② 법인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
항증명서 발급예약을 하려는 자는
상호, 공개를 원하는 임원 등의 주
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전자
우편주소 등. 단, 발급 가능 시간
을 통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
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
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기
록 열람 및 영구보존문서의 발급
예약) 전 제14조의4조, 제14조의5
조의 규정은 이미지폐쇄등기부 등
기기록의 열람예약 및 영구보존문
서 발급예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의4(발급예약절차) ① -----

발급예약을 통해 신청인이 사전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
를 신청하는 경우 -----

-----.

② -----
----- 발급예약을 통해 신청
인이 사전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

제14조의6(이미지폐쇄등기부 등의
열람 및 영구보존문서 발급예약)
①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의 규
정은 매대목록과 전산정보처리조
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공
동담보목록을 제외한 영구보존문
서(이하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된 영구보존문서’ 라 함)에
대한 발급예약의 경우에 준용한
다.

<신 설>

<신 설>

제15조 (수수료액 등)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 정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②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

② 이미지폐쇄등기부 및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된 영구보존문서의 열람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다.(2) 및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8.나.(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공시제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된 영구보존문서가 포함된 등기기록의 열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공시제한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그 열람이 가능하다.

제15조 (수수료액 등)

①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

-----.

② -----

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수수료규칙」 제7조 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수료 납부절차) ① (생략)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신청시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무인발급기 발급수수료의 수납 등)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의 수수료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 (등기사항증명서의 파손 출력 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파손출력 등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의 -----

제16조 (수수료 납부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인발급기 발급예약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

제19조의2 (무인발급기 발급수수료의 수납 등)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에 관한 무인발급기의 수수료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 (등기사항증명서의 파손 출력 등) ① -----

----- 무인발급기 발급예약과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이전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인은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 (통계의 특칙) ① 인터넷에 의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과 통계처리는 예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통계 및 수수료 통계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처리한다.

③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따른 열람 및 발급통계와 수수료 통계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처리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 (통계의 특칙) ① 인터넷에 의한 무인발급기 발급예약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

-----.

② 인터넷에 의한 무인발급기 발급예약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

-----.

③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640